

무역법 301조, 구성품에도 세트에도 중복 부과됐다

[미 CBP 원산지 리스크]

공구세트 중첩 적용 사례로 본 비특혜원산지 리스크 (13p)

[이주의 초점]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 전면 시행
"4월 29일부터 R&D 연구소도 보세공장" (4p)

[위클리 뉴스]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및 의약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포장지 대란에 농식품부,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중동 리스크에도 중소기업 수출 신기록 '올해 1분기
298억달러' (7p)

[관세행정]

[한·ASEAN FTA] 캄보디아에서 발행된 송장이
제3국 송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18p)

[품목분류 동향]

'CMP 패드·슬러리, 구리 타겟'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부품과 소재의 품목분류
(29p)



※ Chat GPT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5월 4일(통권 제2177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 전면 시행
“4월 29일부터 R&D 연구소도 보세공장”

07 Weekly News

오피니언

- 13** 미 CBP 원산지 리스크
권민경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 팀장
비특혜원산지 판정이 좌우한 관세
무역법 301조, 구성품에도 세트에도 중복 부과

관세행정실무해설

- 18** 관세행정안내
[한·ASEAN FTA] 캄보디아에서 발행된 송장이
제3국 송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27** 질의응답사례
원산지국명 표기 방법

품목분류동향

- 29** 품목분류해설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부품과 소재의
품목분류
- 44** 세번 바로잡기
조제된 달걀
-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 전면 시행 “4월 29일부터 R&D 연구소도 보세공장”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및 철강산업 보호장치 마련

관세청이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세가공 제도 규제혁신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연구·개발(R&D) 단계까지 보세제도를 확장하고 물류·세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덤핑방지 관세 대상 철강제품의 우회수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신규로 도입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의 후속 조치로 3월 24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시행한 것으로 시작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4.6.)」,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4.29.)」까지 시행됐다고 4월 29일 발표했다.



‘보세가공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하는 이명구 관세청장(출처: 관세청)

보세가공 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없이 제조해 수출하는 구조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의 약 95%에 활용되는 핵심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보세제도를 ‘연구·개발-생산-물류-수출 전 주기 지원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연구소도 보세공장” 통관·관세 부담 벗어나

업계에서 가장 반기는 변화로 연구·개발 시설의 보세공장 특허 허용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이 ‘양산제품 제조·가공 시설’로 한정돼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 및 검사 장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절차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반도체·바이오 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앞으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동시에 감소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신제품 조기 출시에 따른 매출 증대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인한 경제 효과를 연간 1조 4,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원자재를 수입해 보세공장 내 연구개발실에서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시제품을 조립 및 개발 중인 HD현대일렉트릭은 관세 부담 없이 고가의 핵심 부품을 수입해 연구·개발할 수 있어 세액 납부 유예에 따른 금융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연간 5%의 세액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수입원재료 사용신고로 서류 제출 및 선별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검사를 위한 화물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개발 현장에 화물을 즉시 투입, 행정적 병목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 세제·물류 규제 개선... 특송업체 집하차량도 보세운송 허용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물류 제도도 구체적으로 개선됐다. 우선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과세방식 선택 기한이 연장된다. 국내로 수입 시 기업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이 기존 ‘외국 원재료 사용 전’에서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됐다. 신청 누락에 따른 세금 추징 위험이 방지돼 기업은 조세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 수출 시 페덱스(FedEx), DHL 등 특송업체 집하차량을 보세운송 수단으로 적재지 공항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등록된 보세운송 차량만 이용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방산·조선산업 등에서 긴급 교체용 엔진 부품을 수출할 때 운송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특송업체 차량 보세운송 허용으로 물류 효율성이 향상되고 연간 9,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봤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경우 내국 원재료만으로 제조·가공하는 ‘내국작업’에 대한 허가와 작업 종료신고 절차를 생략해 내국물품도 자유롭게 연구·개발과 제조·가공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고시 개정으로 보세공장 외부의 보관장소를 사전에 등록하고 이후 반출입신고 등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다. 선박 수주 증가로 건조 장소가 부족한 문제를 겪는 조선산업에서 거대 원자재 보관 및 작업장소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세공장을 통한 덤핑방지관세 대상 철강제품의 우회수입 차단이 신규로 도입됐다. 그동안 일부 수입업체는 중국·일본산 덤핑 대상 철강제품을 보세공장에서 단순 가공한 뒤 우회수입해왔다.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국내 수입 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보세공장 특허 조건으로 부여했고 특허 기간도 1년으로 제한해 매년 위반 여부를 심사해 위반이 있는 경우 특허 갱신을 불허할 수 있게 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 대상인 수입산 열연강판이 보세공장을 통해 컬러강판으로 둔갑해 국내 시장에 저가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원료과세의무화를 통해 국내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입장을 밝혔다.

■ 항공기 MRO 일괄반입 가능 및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그밖에 신산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가 4월 6일 개정되며 항공기 MRO(정비·수리·개조) 산업에서는 외국 항공기와 수천 개 부품을 ‘한 번의 승인 절차로 일괄 반입이 가능해졌다. 과세보류 상태에서 MRO 작업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내국적 항공기도 함께 정비·개조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대형 항공기 개조 MRO 물량유치에 성공했다”며, “5월 초 국내 최초로 보잉사 B777 여객기가 입고돼 화물기로 개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안착 이후에는 연간 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성과를 전했다.

지난 3월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며 부산·울산·경남 지역 오일탱크 56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석유·화학 제품을 블렌딩 탱크로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친환경 선박유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로, 북극항로 개척과 연계된 해상 물류 전략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과 함께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팀(가칭)’을 설치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부권 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고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구축해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단순한 통관 지원을 넘어,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부터 최종제품 생산·수출까지 전 과정의 원스톱 지원체제로 작동하게 된다.

미·중 갈등, 중동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이번 보세제도 개편은 기업들의 수출 가속화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및 의약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과 의약품에 대한 관세정책 개편에 맞춰 관세청이 한·미 간 품목번호(HSK-HTS) 연계표를 4월 30일 공개했다.

미국은 최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의 '함량'을 기준으로 최대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품목번호(HTS)별로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이 변경된 관세체계는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제품에 함유된 금속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면제되고, 대신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관세 1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일 품목도 구성 비율에 따라 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품목분류와 성분 분석이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비가단주철로 만든 주물제품(제7325.10호), 알루미늄 선·케이블 중 철강심이 없는 것(제7614.90호), 특정 변압기(제8504.21호, 제8504.22호, 제8504.32호) 등은 품목관세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관련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 철강, 알루미늄, 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

구분	품목 예시	세율	
		변경 전	변경 후
전부 또는 거의 전부 철강·알루미늄·구리로 만든 제품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50% (함량 과세)	50%
파생제품 중 해당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25%
금속집약적 산업설비·전력망 장비 일부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등		15% (2027.12.31.까지)
품목관세 제외 품목	화장품·식품 용기, 의자, 가구 등		0%

출처: 관세청

의약품 분야에도 변화가 일었다. 오는 7월 31일부터는 연계표상 미국 HTS에 해당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특허를 받은 한국산 의약품은 1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뇌전증 치료제, 수면제, 인슐린 등 일부 신약 제품이 관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반면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분야인 제네릭 의약품(복제약)과 해열진통제 원료인 아세트아미노펜, 비타민, 피임약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이 발표한 연계표는 FTA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 ‘미국 관세정책 대응 지원’ 게시판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해당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 의약품 및 그 원료 품목관세 신규 부과조치 내용 ●

구분	품목 예시	종류	세율	비고
연계표상 품목번호 해당	뇌전증 치료제, 수면제, 인슐린 등	FDA 특허의약품 및 그 원료	100%	① 한국·일본·EU·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은 15%, 영국산은 10% ② 미국 내 생산계획을 승인받고 최혜국 대우 가격협정을 체결한 경우 0%
		희귀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및 그 원료	0%	-
연계표상 품목번호 미해당	아세트아미노펜, 비타민, 피임약 등	-	0%	-

포장지 대란에 농식품부,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포장재 원료 수급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조치를 도입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포장재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품 유통 지연으로 인한 물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다.

이번 유예 조치는 농수산물 원산지가 변경됐는데도 기존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한 수입·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괄적인 유예가 아닌 업체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 방식이 적용된다. 업체가 제출한 포장재 재고 증빙 자료와 월평균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실제 소진에 필요한 기간을 차등 산정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개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유예를 승인받은 업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원산지 변경 사실을 자사 웹사이트 팝업, 공식 앱 알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공지, 대형 유통매장 내 전자안내판 등을 활용해 안내해야 한다. 포장재 원료 수급난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또 다른 합성수지나 종이 등이 소모되는 오프라인 안내문 제작은 지양된다.

또한 유예기간이 남았더라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적용된 신규 포장재가 입고되면 즉시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정상 표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유예를 신청하려면 협회 회원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산업기획팀), 비회원사는 농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를 통해, 국산 비축 콩 공급업체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전략작물육성단)에 접수할 수 있다. 협회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에 동일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투트랙' 접수 방식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서류 심사와 함께 원산지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무작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업체가 제출한 재고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허위자료 제출이 적발되면 유예 승인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호르무즈 막히며 자금난 겪는 선사 25억 무담보 보증 등 금융지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무담보 신용보증을 신설하는 등 전방위 금융지원에 나섰다.

4월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우리 선박 26척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선박들은 보험료 할증, 유류비 상승, 선원 위험수당 증가 등 비용 부담이 늘고 있으며, 운임 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등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이에 해수부와 해진공은 긴급 대응책으로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선사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보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해수부 장관 승인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선사들이 담보 부담 없이 단기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선사당 최대 25억원이며, 보증기간은 1년 이내 단기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속도를 높인다. 기존에는 프로젝트 설립을 통해 회사채를 간접 인수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를 해진공이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지원까지 소요 기간을 최대 3주 단축했다. 지원 한도는 선사당 최대 30억원이며, 만기는 1년이지만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선사당 최대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기가 도래된 기존 금융상품의 원리금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도 지원한다. 선박담보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60~80%에서 70~90%로 한시 상향해 선사들이 보유한 선박 자산을 활용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수부는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내 중소선사의 보험료 할증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원을 확보했으며, 5월 초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해진공 홈페이지(www.kobc.or.kr)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비롯한 지원 세부 내용을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 서준식 기자 |

'발효 20년'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정부가 싱가포르와의 FTA 개선 협상에 본격 착수하며 공급망·에너지·투자 협력을 포괄하는 경제 협력 확대에 나섰다.

4월 2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7~28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통상 현안과 에너지 협력, 투자 유치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발효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됐다.

산업부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28일 FTA 개선을 위한 협상 세칙에 서명하고, 공급망, 그린 경제,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무역원활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1차 협상에 돌입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한 에너지 공급망 점검도 병행됐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 기업, 원자재 분석기관과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 및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을 방문해 AI·반도체 등 첨단 제조 분야 협력 확대를 요청했으며,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와는 K-패션·뷰티·식품 등 소비재의 역지구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 서준식 기자 |

중동 리스크에도 중소기업 수출 신기록 '올해 1분기 298억달러'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중동전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K-뷰티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와 반도체 등 전략 품목의 호조, 온라인 수출 확대가 작용하면서 중소기업 수출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월 30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98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최근 3년간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이던 수출이 올해 들어 뚜렷한 반등세를 나타낸 것이다. 수출 중소기업 수 역시 6만 4,706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며 수출 저변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수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26년 1분기 온라인 수출액은 3억달러로 전년 대비 38.2%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분기 기준 3억달러를 돌파했다. 미국(25.1%), 중국(43.4%), 영국(191.6%) 등 주요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기반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온라인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의 핵심 채널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수도 2,735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이 21억 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하며 여전히 중소기업 수출품목 1위를 유지했다. 미국으로 화장품 수출이 35.1%, 유럽으로는 43.7% 증가하는 등 글로벌 K-뷰티 수요가 지속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현지화 마케팅과 유통망 확대가 효과를 발휘했으며, 유럽에서는 브랜드 현지 법인 설립과 온라인 채널 강화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온라인 화장품 수출도 74.2% 급증하며 디지털 플랫폼 중심 성장세를 입증했다. 미국(60.8%), 중국(91%), 영국(282%) 등 수출이 크게 늘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역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1분기 반도체 수출은 11억 3,000만달러로 55.6% 증가했으며, 이는 인공지능(AI)·5G 투자 확대에 따른 고성능 통신장비, 클라우드 서버 관련 글로벌 수요 증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홍콩(214.8%), 대만(82.5%), 베트남(35.4%) 등 아시아 주요 생산·유통 거점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확대됐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 전반이 호황을 이루는 모습이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14억 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하며 6분기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러시아의 수입차 세금 인상과 중동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이 주요 원인으로, 특히 러시아·키르기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권역(Δ22.0)과 중동 시장(Δ10.5)에서 수출 감소가 눈에 띈다.

●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국가 ●

(단위: 억달러, %)

국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인도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수출액	48.8	44.7	27.4	22.2	20.2	9.4	9.4	6.8	5.9	5.8
증감률	10.6	Δ2.7	9.7	Δ2.8	86.3	29.4	23.6	4.4	Δ4.0	Δ2.9
비중	16.4	15.0	9.2	7.4	6.8	3.2	3.1	2.3	2.0	1.9

수출액 기준(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별로는 중국이 48억 8,000만달러 규모로 중소기업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다. 스마트폰 부품용 동박 등 구리 가공제품(65.8%)과 의류(36.3%)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어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베트남,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반도체와 중간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확대됐다. 반면 미국은 화장품(35.1%)과 자동차부품(4.4%) 수출이 증가했으나 일부 기계류 품목은 감소하는 등 전체 수출이 2.7% 감소했다.

중동 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중동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특히 전쟁 발발 직후인 3월에는 수출이 49.5% 급감하는 등 충격이 컸다.

2026년 1분기 실적은 중소기업 수출지역이 미국과 중국에서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으로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중동전쟁과 같은 외부 변수에 따른 충격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 전략의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중기부 심재윤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시장 및 제품 다양화, 주력 수출제품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물류바우처 등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여의도 1.4배 규모” 수입금지 중국산 사과묘목 대규모 밀수 적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량으로 밀수한 일당이 검역당국에 적발됐다. 적발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해당하는 과수원을 조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내 과수산업과 농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차단을 위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산 사과묘목 등 수입금지 품목을 조직적으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적발해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수사 결과 과수묘목 생산업자와 수입업자, 중개인, 물류업자 등으로 구성된 일당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역과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묘목을 완구나 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신고해 수차례 불법수입했다. 물품 대금은 다수 계좌로 분산 송금하거나 현금 거래로 자금 추적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주와 복숭아묘목 13만 8,000주를 비롯해 복숭아 종자 1,161kg, 동남아 및 유럽산 과채류 종자 18kg 등으로, 모두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품이다. 해당 물량은 국내 유통 시 수십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과묘목은 과수화상병의 주요 기주식물로 알려졌다. 과수화상병은 발생 시 해당 과수원을 전면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큰 치명적인 식물전염병이다.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중국 등 대부분 국가로부터 사과묘목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과묘목 63만주는 약 413만㎡(125만평) 규모의 과수원 조성이 가능한 양으로,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해당한다. 검역본부는 단일 묘목 밀수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대규모로, 국내 유통될 경우 과수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압수된 사과묘목(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실제로 과거 불법수입된 과수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유입되면서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 약 2,54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투입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내 묘목 수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법수입이 지속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검역본부는 생산·유통을 앞둔 불법수입 묘목을 긴급 압수해 전량 소각하는 등 폐기 조치를 완료했으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 인사]

■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김기동

대구세관장 이철훈

<2026년 4월 27일자>

미 CBP 원산지 리스크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은 무역법 301조 등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 비특혜원산지 판정의 핵심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지만,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개별 사례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에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하는 본 연재는 CBP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실무상 시사점을 제시한다.

비특혜원산지 판정이 좌우한 관세 무역법 301조, 구성품에도 세트에도 중복 부과

- 미 관세정책의 함정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연구 ① HQ H304235



권민경 |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 팀장

1. 개요 및 배경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결정문 HQ H299857(2018.9.6.), HQ H301769(2019.4.10.), 그리고 HQ H304235(2019.7.30.)는 보복관세 체계 내에서 '세트물품'의 관세율 산정 원칙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사례다.

우선 HQ H299857 결정은 중국산 129개 공구세트의 관세 산정 시, 구성품에 부과된 무역법 301조 보복관세율¹⁾을 세트 전체의 관세율을 결정할 때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미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TSUS) 제8206.00.00호는 세트물품의 관세율 산정 시 세트 내 구성품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복관세 도입 전에는

1)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301조에 따라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기본관세율이 가장 높은 소켓류(9%)가 기준이었으나 보복관세 도입 후에는 기본관세율(3.9%)에 보복관세(25%)가 더해진 래칫류 등의 실효세율(28.9%)이 이를 상회하게 됐다. 이에 CBP는 보복관세가 포함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고세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립하고 세트 전체에 28.9%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는 **세트품목 자체가 보복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구성품이 보복관세 대상에 해당하면 세트 전체의 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HQ H301769 사례는 앞선 선례인 H299857의 법리를 170피스 공구세트에 적용해, 개별 구성품과 세트 완제품에 부과된 보복관세를 중첩해 과세한 사건이다. 당시 세트 구성품 중 래칫 등은 301조 보복관세 목록 1(25%)에 해당해 세트 전체의 관세율을 28.9%로 끌어올렸고, 이후 세트품목 자체가 보복관세 목록 3(10%)에 추가되면서 두 조치가 모두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수입자는 동일한 301조 보복관세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정책적 의도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CBP는 보복관세가 모든 관세에 ‘추가’돼 부과된다는 문언 해석을 근거로 이를 기각하며 최종 38.9%의 관세율을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HQ H304235는 수입자의 재심 청구에 대해 기존 논리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며, 보복관세의 중첩 적용이 법령의 문언상 타당함을 확정한 사례다.

이번 호에서는 재심 신청에 대한 결정사례인 H301769 사건을 중심으로 보복관세 체계 내에서 세트물품의 관세율 산정 체계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대상 물품은 중국에서 제조된 ‘170피스 공구세트(Model No. CTK170MPN)’로, 플라스틱 성형 케이스에 포장된 형태로 수입됐다.

● 참고 이미지 ●



이 공구세트는 일반해석규칙(GRI) 제1항에 따라 HTSUS 제8206.00.00호에 분류되며, 해당 호는 '제8202~8205호의 두 개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공구를 소매판매용 세트로 구성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HTSUS 제8206.00.00호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호의 기본관세율은 '세트 내 품목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정해진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8년 7월 6일부터 1974년 무역법 301조 (b)항에 근거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했으며, 목록 3에 의해 제8206.00.00호의 공구세트 자체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 무역법 301조 조치 시행 경과 ●

구분	시행일	근거법령	추가관세율
목록 1(List 1)	2018년 7월 6일	제99장 제3부 주식20(b)	25%
목록 2(List 2)	2018년 8월 23일	제99장 제3부 주식20(d)	25%
목록 3(List 3)	2018년 9월 24일	제99장 제3부 주식20(f)	10% 25%(2019년 1월 1일부터)

● 공구세트의 구성과 관세율 현황 ●

구성품	분류	기본관세율	301조 관세율
래칫	제8466.10.0175호	3.9%	25%
연장장치	제8466.10.0175호	3.9%	25%
어댑터	제8466.10.0175호	3.9%	25%
유니버설조인트	제8466.10.0175호	3.9%	25%
소켓	제8204.20.0000호	9%	10%
드라이버	제8205.40.0000호	6.2%	10%
복합렌치	제8204.11.0030호	9%	10%
비트드라이버	제8466.10.0175호	3.9%	10%
비트	제8207.90.6000호	3.7%	10%
육각렌치	제8204.11.0060호	9%	10%
바늘코펜치	제8203.20.6030호	\$0.12/12개+5.5%	10%
조절식렌치	제8204.12.0000호	9%	10%
슬립조인트플라이어	제8203.20.4000호	12%	10%

중국산 공구세트 관련 재심 신청 당시 기준

301조 관세율은 재심 신청 당시 관세율이다. 기본관세율만 고려하면 슬립조인트플라이어(12%)가 가장 높으나, 무역법 301조 보복관세를 포함하면 래칫(3.9+25%=28.9%)이 세트 전체의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 물품'이 된다.

3. 법적 쟁점

1) 세율 결정 기준: 세트 전체의 세율을 정할 때, 구성품에 적용된 301조 보복관세를 '관세율'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하는가?

2) 이중 부과 가능성: 세트물품 자체가 목록 3에 포함돼 10%의 추가관세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이미 보복관세가 반영된 기준 물품의 세율(28.9%)에 다시 10%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가(수입자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4. 수입자 주장 및 CBP의 판단 논리

본 건 수입업자는 CBP의 이전 선례인 H299857에서 확립된 방식에 따라 계산된 28.9%의 관세율만 해당 물품에 적용 가능한 유일한 세율이라고 주장했다. 세트물품의 관세율은 세트물품의 구성품 중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관세율에 따른다는 원칙에 근거해 이미 28.9%의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목록 3에 따른 10% 관세를 추가하는 것은 USTR의 의도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입자는 USTR이 공구세트에 대한 301조의 추가관세를 모두 부과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세트물품 자체에 대해 목록 3 추가 이전에 별도의 기본세율이나 301조 추가관세가 부과된 점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CBP는 먼저 제8206.00.00호에 기본관세율이 없다는 수입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호의 기본관세율은 '세트 내 품목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관세율'이며, 그 수치가 구성품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기본관세율의 부존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제8206.00.00호가 목록 3에 포함되기 전까지 별도의 추가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 USTR이 301조 조치를 중첩 적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CBP는 USTR의 의도에 대해서는 양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CBP는 H299857과 마찬가지로 HTSUS 문언에 따른 해석을 관철했다.

구체적으로 ① 제8206.00.00호의 기본관세율 규정 어디에도 관세율을 '최고 기본관세율 적용 품목'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고, ② HTSUS 제99장 주석 (e)에 따르면 목록 3에 대한 301조 조치는 기본관세율에 '추가해 부과됨이 반복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③ 목록 3 해당 품목은 반덤핑·상계관세 및 기타 관세의 적용을 계속 받아야 하고 여기서 '기타 관세'는 목록 1에 따른 관세를 의미한다는 점을 근거로, 대상 물품의 최종 관세율은 28.9%의 기본관세율에 세트 자체에 대한 목록 3 추가관세 (10%)를 더한 38.9%가 된다고 결정했다.

5. 판정 결과 및 시사점

CBP는 제8466호 구성품의 합계 세율(기본관세율 3.9%+목록 1 보복관세율 25%=28.9%)을 세트 전체의 기본관세율로 확정된 후, 여기에 세트 자체에 부과된 목록 3 보복관세(10%)²⁾를 가산해 최종 38.9%의 세율을 확정했다.

이 사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트물품의 관세 리스크 관리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세트 내 일부 구성품이라도 고율의 보복관세 대상에 해당하면, 세트 전체의 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제3국에서 조립되는 세트물품도 핵심 구성품이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본 사례와 같은 중첩 과세 위험에 노출된다. 만약 해당 사례에서 세트의 기준 품목(래칫 등) 원산지를 중국산에서 제3국산으로 전환해 실질적 변형이 인정된다면, 전체 세트의 관세율은 38.9%보다 상당히 낮아졌을 것이다. 따라서 세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개별 구성품이 보복관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원산지가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중첩 과세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ORIGIN CASE

- Case 1. 소기업
- Case 2. 중국 제품 생산공장 내 조립
- Case 3. 한국에서 조립
- Case 4. 중국산 인건
- Case 5. 중국산 부품
- Case 6. 중국산 부품 사용
- Case 7. 중국산 부품 사용
- Case 8. 중국산 부품 사용
- Case 9. 중국산 부품 사용
- Case 10. 중국산 부품 사용
- Case 11. 중국산 부품 사용
- Case 12. 중국산 부품 사용
- Case 13. 중국산 부품 사용
- Case 14. 중국산 부품 사용
- Case 15. 중국산 부품 사용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는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와 관련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목록 3에 포함된 중국산 물품의 관세는 결정 당시 10%의 추가세율이 적용됐으며, 이는 2019년 5월 9일 25%로 인상됐다.

[한·ASEAN FTA] 캄보디아에서 발행된 송장이 제3국 송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ASEAN FTA
질문	<p>다음 그림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한·ASEAN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캄보디아에 소재한 B사(수출자 또는 생산자 외 기업)가 송장(Invoice)을 발급한 경우 제3국 송장에 해당하나요?</p>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LR A["A사 수출자(생산자) (캄보디아)"] -- ② 발주 --> B["B사 중계무역자 (캄보디아)"] B -- ① 발주 --> C["C사 수입자 (한국)"] C -- ③ --> A </pre> <p>③ 물품은 한국으로 직접운송</p> </div>
답변	<p>캄보디아는 한·ASEAN FTA의 당사국이므로, 캄보디아에 소재하는 B사가 발급한 송장은 제3국 송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제3국 송장은 수출입 당사국 이외의 제3국에서 발급하는 송장으로, 제3자 송장과 구별됩니다. 한·ASEAN FTA를 적용하려면 제3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13란의 '제3국 송장(Third country invoicing)'에 표시를 하고, 제7란에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p> <p>다만, 위 사례는 제3국 송장이 아니라 제3자 송장이 발급된 경우이므로, 원산지증명서 제13란과 제7란에 제3국 송장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p>

2. FTA 원산지증명서

1) 개요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려면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원산지 규정을 충족했다는 원산지 증빙자료[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를 갖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방식은 협정에 따라 다른데, 최근 발효된 협정은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발효된 FTA는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의 대상인 한·ASEAN FTA는 대표적인 기관발급(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원산지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각 란은

협정에 정해진 작성 방법에 따라 기입해야 한다.

2)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의 방식은 크게 2가지인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눌 수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고, 두 번째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 세 번째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이 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방식을 합쳐 자율발급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한·ASEAN FTA는 대표적인 기관발급 협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협정에서 상품의 생산자 및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는 실무적으로 'AK FORM'이라고 불리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한·ASEAN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에서 정하고 있다.

한·ASEAN FTA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매 선적 건마다 발급되고 영어로 작성되며,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통일서식)에 따라 A4 용지에 작성 및 발급돼야 한다.

AK FORM은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적인 작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한 발급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발급기관이란 한·ASEAN FTA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정부에 의해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각 국가별 발급기관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캄보디아에서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베트남의 경우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ASEAN FTA에서 각 당사국은 발급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무국을 통해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하고, 해당 목록의 변경 사항은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FTA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 등)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및 팩스번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

는 자의 소속·성명 및 서명 견본, 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증명서 발급기관의 인장(印章)의 견본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관세청장은 해당 통보내용을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을 때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원산지 지위의 결정 목적상, 발급기관은 당사국의 개별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신청마다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해,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해 ①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해 정당하게 작성 및 서명되고, ②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며, ③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 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하고, ④ 상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장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명시된 바와 같이 수출상품과 일치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첨부해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현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토·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다만,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와 제3국 송장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는 통일증명 서식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협정에서 정한 작성 방법대로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형식적 하자가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서는 AK FORM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서식에는 AK FORM의 구성 항목인 제1란부터 제13란까지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OCP,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제21조에서는 상업송장이 제3국에서 발행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해당 규정에서는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회사(a company located in a third country) 또는 그 회사의 계정으로 수출자(an exporter for the account of the said company)에 의해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당사국

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으며(다만, 그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상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FTA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서는 제3국 송장(Third Country Invoicing)에 관한 사항을 제13란 및 제7란[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에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 표시를 합니다.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 <후략>

제3국 송장이 발급된 상황에서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에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이를 사소한 오류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다. 부록 1 OCP 제12조에서는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품의 수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사실상 상응한다면, 그 사소한 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ASEAN FTA에서는 제3국 송장이 발행된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에 관한 정보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소한 차이로 보지 않고, 하자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우리나라 관세청과 서울세관의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집'에는 제3국 송장 정보 미기재에 대한 사례가 포함됐다.

한국 수출자 A사는 홍콩에 소재한 B사에 도르래(PULLEY)를 수출하면서 수입자 B사의 요구에 따라 수출물품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C사로 선적하고,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C사로 송부(제3국 무역거래)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 제13란에 제3국 송장 발행은 체크했으나, 제7란에 제3국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한·ASEAN FTA 특혜관세 혜택이 거부됐다.

한·ASEAN FTA OCP에서 규정한 제3국 송장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반드시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규정을 적용했는지가 실무적으로는 큰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실제 원산지증명서에 관련 정보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는 협정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에 따라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비당사국 송장 발행 회사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와 세관 서면 신고서 간 불일치 같은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당사국 송장 거래이지만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 송장 발행회사의 정보가 미기재된 경우 해당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 협정에서는 이를 선택 사항으로 정하거나 또는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호주 FTA에서는 비당사국 발행 송장거래를 인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에서 비당사국 발행 송장 거래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비고(9번)란에 비당사국 발행 송장임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란의 기재는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 발행 송장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비당사국 발행 송장거래의 경우 가급적 원산지증명서 비고(9번)란에 비당사국 발행 송장거래임을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EU FTA와 같이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하는 협정은 제3국 송장 등에 관해 특별히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요구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신규 발효 협정인 한·UAE CEPA(2026년 5월 1일 발효) 제3장(원산지 규정) 제3.27조(제3자 송장)에서는 상품의 수출자는 '제3자 송장'이라 기재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가와 같은 정보는 부속서 3-나(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적절한란에, 또는 제3.22조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산지신고서에 표시하도록 해,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에도 관련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해당 질문 사례는 수입자인 한국의 C사가 중계무역자인 캄보디아의 B사로 물품을 발주하면, B사가 수출자(생산자)인 캄보디아의 A사에 그대로 발주해 물품을 수출하는 상황이다.

계약관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A사는 생산부터 수출에 관한 업무를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B사는 이를 중계하며 수출 관련 서류(제3국 송장) 작업만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한 업무 진행 시 해당 중계무역자(B사)가 제3국 송장에 해당해 제7란 및 제13란에 제3국 송장에 관한 정보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제3국 송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관련

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 당사자 및 수출자 등의 정의 및 제3국에 대한 판단

한·ASEAN FTA에서는 제3국(Third Country)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확인함과 동시에 협정에서 정한 당사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등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단 한·ASEAN FTA의 부속서 3(원산지규정) 제1조(정의)에서는 제3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국’이란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말한다.

또한 한·ASEAN FTA에서 ‘당사국들’이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말하며, ‘당사국’이란 한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말한다. 여기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각각 말한다.

또한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에 대한 정의는 한·ASEAN FTA OCP 제1조(정의)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규정에서 ‘수출자’란 물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물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고,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부속서 3의 제1조에 규정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수입자’란 물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물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결국 한·ASEAN FTA 목적상 캄보디아(왕국)는 ‘당사국’에 포함되고, 캄보디아에 소재해 물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한·ASEAN FTA 목적상 ‘수출자’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에서는 캄보디아는 한·ASEAN FTA의 당사국이므로, 캄보디아에 소재하는 B사가 발급한 송품장은 제3국 송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제3국 송장은 수출입 당사국 이외의 제3국에서 발급하는 송장으로 제3자 송장과 구별되며, 결론적으로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제13란과 제7란에 제3국 송품장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해당 사안은 한·ASEAN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회사(a company located in a third country) 또는 그 회사의 계정으로 수출자(an exporter for the account of the said company)에 의해 발급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ASEAN FTA 목적상 제3국은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말하기 때문에 해당 사례에서 중계무역자인 B사가 캄보디아 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지 않았다

면(설령 당사국인 베트남에 소재하더라도) 제3국에 해당해 해당 중계무역자가 발행하는 상업송장은 제3국 송장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A사(수출자, 생산자)와 B사(중계무역자)는 모두 동일한 국가(캄보디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계무역자는 제3국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제3국 송장 관련 사례 확인

제3국 송장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두 가지의 경우 즉, ①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회사 또는 ② 그 회사의 계정(account)으로 수출자에 의해 송장이 발급되어야 한다.

실제 제3국에 소재한 회사가 송장을 발급하거나, 송장 자체는 수출자가 발급했더라도 제3국에 소재하는 회사의 계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제3국 송장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제 한·ASEAN FTA와 관련된 제3국 송장 관련 질문과 답변 사례를 소개하겠다.

첫 번째 사례는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상 ‘제3국 송장’ 기재 시 제3국에 수입국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제3국의 정의는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및 비당사국을 말하기 때문에 수입국은 제3국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제3국 송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두 번째 사례는 판매자(싱가포르)와 생산자 및 선적자(말레이시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Selling entity(판매자)는 판매자, 송장 발행은 생산자 및 선적자(말레이시아)가 진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에서는 Selling entity(판매자)가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 ABC 싱가포르이므로 제3국 발행 송장에 해당되며, 제3국 송장 여부는 수입신고 시 제출되는 송장상 표기돼 있는 화주로 결정되어야 하며, 제출된 송장에는 판매자가 화주로 표기돼 있어, 해당 송장이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됐다는 근거가 없고 Selling entity(판매자)를 화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세 번째 사례는 수출자(태국)가 송장을 발행하는 상황에서 ABC CO., LTD(태국)이 ABC INC(일본) 회사를 대신해서 발행한다는 문구가 표기[ABC(THAILAND) CO., LTD ON BEHALF OF ABC INC(JAPAN)]된 사례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에서는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의 계산으로(for the account) 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경우에도 제3국 송장에 해당될 수 있고, 일본기업의 계산으로 태국 수출자에 의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송장이 일본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해당 사례는 일본회사의 계산으로 태국 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경우에는 제3국 발행 송장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네 번째 사례는 제3국 송장이 발급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10란(송장번호 및 발급일자)에

제3국 수출자가 발급한 송장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재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에서는 한·ASEAN FTA의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는 계약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 번호가 기재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관련 무역서류로 제3국 무역거래라는 점과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제3국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번호가 기재된 경우도 허용하고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와 내용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게 관세청은 2021년 우리 수출기업이 ASEAN 국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차이, 통관 애로 등 7가지 주요 유형에 대해 원활히 통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의(통관원활화 합의사항)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제3자 거래 시 최초 거래 송장정보 기재에 관한 사항이다. 즉, 기존에는 수출국·수입국 내 제3자 거래 시, 원산지증명서상 최초 거래 송장 정보가 기재될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ASEAN이 최종 수입자에게 발행된 송장번호 기재 요구)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최초 거래 송장 정보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원산지 판정 후 제3국 송장에 의한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 수출자의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가격을 작성할지 제3국 송장에 의한 FOB 가격을 작성할지의 문제다. 이에 대해 한·ASEAN FTA에서는 2012년 한·ASEAN FTA 제7차 이행위원회 및 제16차 관세위원회 합의 결과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생산자가 발행한 송장가격(FOB) 또는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가격(FOB)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3국 송장에 의한 FOB 가격으로 역내부가가치(RVC)의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에 더해 한·ASEAN FTA 집행지침에서는 제3국 송장의 가격에 대해 제3국 발행 송장의 경우 수출국(ASEAN 회원국)에서 최초 발행된 송장의 가격이 기재돼야 하며, 최초 발행된 송장의 가격이 아닐 경우 최초 수출자와 제3국인 간의 관련 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등을 징구해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또한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는 수출국에서 최종 결정되고 제3국 당사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가격에 의해 원산지가 왜곡돼서는 안된다고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2021.4.29. 선고, 2020누38364[관세등부과처분취소]에서도 제3국 판매자가 발행한 송장(Third Country Invoice)의 FOB는 제3국 판매자의 이윤, 경비 등이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제3국 송장 FOB에 의해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산정할 수 없고,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된 송장의 FOB에 의해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FTA 목적상 제3국의 중계무역자가 개입하더라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것을 ‘거래당사자 확장’이라고 부른다.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상황에서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데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다만, 거래당사자 확장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한·ASEAN FTA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정보를 작성해야 하는 대표적인 협정 중 하나다. 다만, 그

전에 해당 거래 상황이 제3국 송장 건에 해당돼 원산지증명서상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상황들을 잘 확인해서 실제 제3국 송장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제3국 송장에 해당된다면 제3국 송장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FTA 특혜관세 적용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원산지 표시 / 원산지국명 표기 방법

**산마리노에서 제조한 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San Marino'와 'Made in Italy' 중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원산지국명 표기 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 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산마리노는 독립된 주권국가로 산마리노에서 제조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Made in San Marino' 등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통관 / 미국 해외 직구 면세 기준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자를 직접 구매(직구)하려는데,
제품 가격이 배송비 포함 160달러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특송으로 반입되는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 물품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특송으로 반입되는 미국 발 목록통관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해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 기준 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 금액은 물품 가격 기준이며, 물품 가격은 물품 대금에 발송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참고로, 목록통관으로 신고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 한다면 200달러 이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150달러 이하의 경우 면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의류와 모자는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초로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를 한 경우 목록통관으로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 / HS Code 변경과 RCEP 적용

RCEP 적용을 받은 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HS Code가 변경됐습니다.
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에 HS Code 정정 요청을 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해당 사례는 관세청 지침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3의 3-1과 유사한 사례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면 됩니다.

■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3.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등

3-1.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으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의 변경 등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는 경우

가. 적용대상 사례

... <중략> ...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HS번호와 다른 HS번호를 적용한 결과,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세율차 발생 여부 무관)

* (예시)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물품이 수리 후 분석대상으로 지정되어 분석한 결과 수입신고한 HS번호와 다른 HS번호로 결정되는 경우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부품과 소재의 품목분류

최민호 | 서울세관 분석실

I. 개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은 약 700조원 정도로 세계 10위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수입은 어떤 구조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안정적인 세금인 소득세가 1위를 차지(약 120~130조원)하고 그다음 2위는 법인세로 약 80~90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부가가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이 잇고 있다.

세금 중 2위를 차지하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삼성전자는 2025년 법인세로 2조 8,427억원, SK하이닉스는 5조 6,280억원을 납부해 우리나라의 총 법인세 84조 6,000억원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은 법인세가 총수입에서 소득세를 제치고 1위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AI 사이클에 메모리 반도체가 직접적인 수혜 물품으로 떠오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합산 이익이 약 5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최고세율(국세기준)은 약 25%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약 125조원의 세금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 규모의 성장으로 1%의 세금 차이도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반도체 분야에서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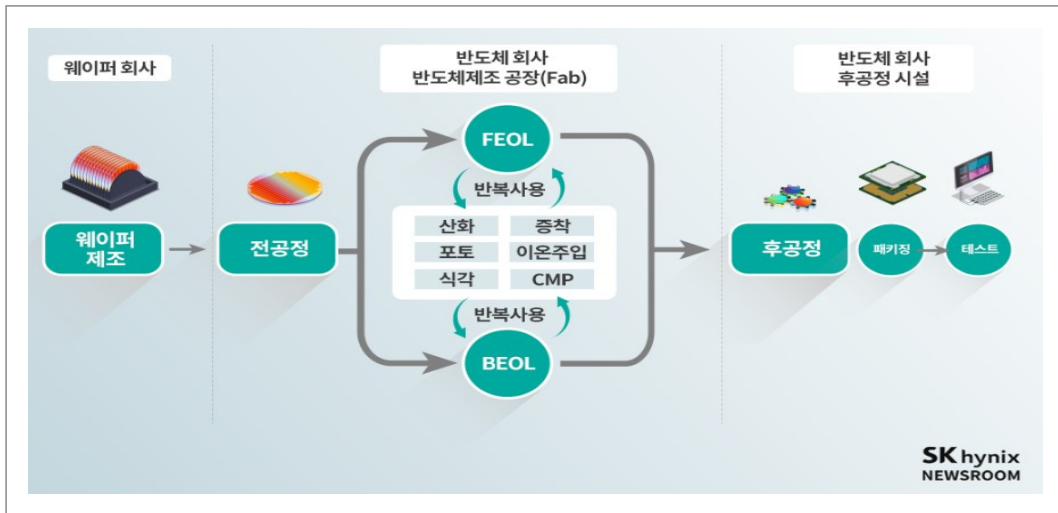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국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과 소재에 관해 설명하고 품목분류의 쟁점사항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II. 반도체

1. 반도체의 정의

반도체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전기를 막는 ‘절연체’의 중간쯤 되는 전기 저항을 띠는 재료를 말한다. 전자기기의 사양이나 성능을 결정하며 제품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전자부품으로 집적회로를 만들어 넣는데, 일반적으로 집적회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 반도체 제조공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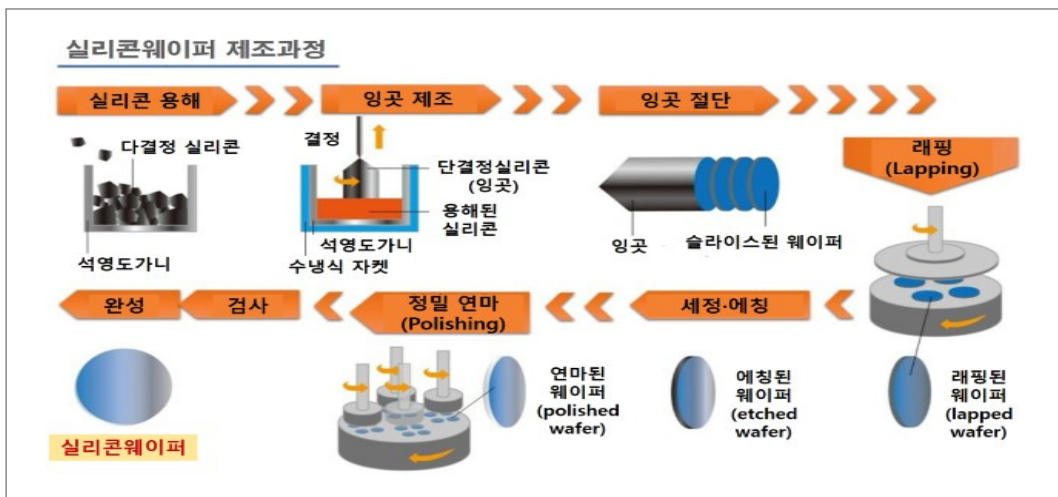
출처: SK하이닉스 뉴스룸

2. 반도체의 8대 공정

1) 웨이퍼 제조공정

웨이퍼 제조공정은 반도체 제조의 출발점으로, 실리콘 잉곳에서 웨이퍼로 잘라내어 사용한다. 웨이퍼는 원판 모양의 실리콘 기판으로 반도체 소자들을 형성할 기반이 된다. 작업과 첨단기술이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다.

● 실리콘웨이퍼 제조공정 ●



출처: KOTRA 도쿄무역관

2) 산화 공정(Oxidatio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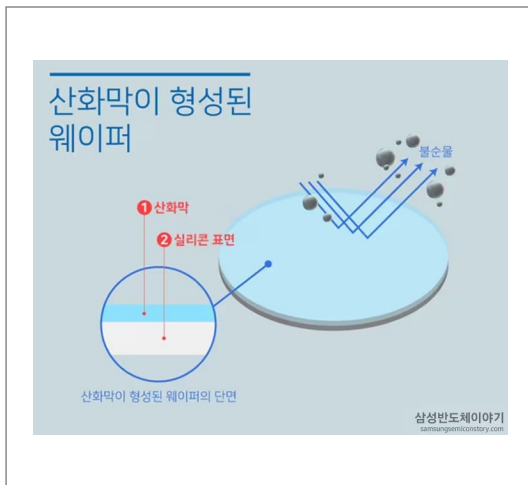
산화 공정은 실리콘웨이퍼 표면에 얇은 산화막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 산화막은 반도체 소자들을 전기적으로 격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3) 포토 공정(Photolithogra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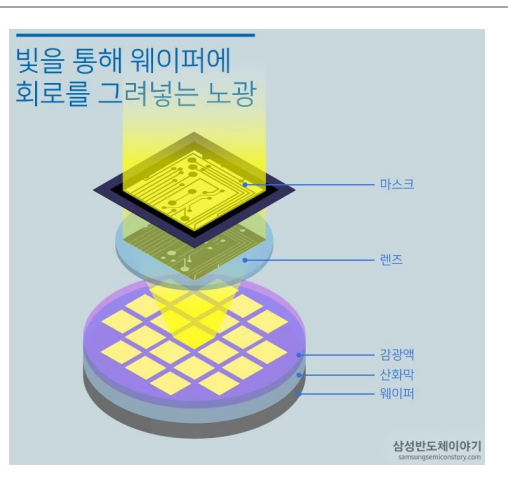
포토 공정은 웨이퍼 표면에 정밀한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마스크와 광원을 이용해 웨이퍼 표면에 미세한 패턴을 전달한다.

포토 공정은 반도체 제조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과정 중 하나로 레지스트의 감광 특성과 광학 시스템의 정확성을 고려해 정확한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도체 웨이퍼 위에 복잡한 회로 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써 다양한 반도체 소자들이 형성된다.

● 산화 공정 ●



● 포토 공정 ●



출처: 삼성전자 반도체이야기

4) 식각 공정(Etching Process)

식각 공정은 반도체 제조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중요한 공정으로, 웨이퍼 표면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패턴된 마스크에 따라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식각의 종류는 크게 습식 식각과 건식 식각으로 나뉜다. 습식 식각(Wet Etching)은 화학 반응을 통해 웨이퍼 표면을 부식시키는 공정이며 반대로 물리적 식각 즉, 건식 식각(Dry Etching)은 플라즈마와 같은 높은 에너지 입자를 사용해 웨이퍼 표면을 부식시키는 공정이다.

● 식각 공정 ●



출처: 삼성전자 반도체이야기

5) 증착과 이온주입 공정(Deposition & Ion Implantation Process)

증착 공정(Deposition Process)은 얇은 층의 물질을 웨이퍼 표면에 형성하는 과정으로 반도체 소자의 핵심 구성 요소를 형성하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증착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화학 기상 증착(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은 기체 상태의 성분을 웨이퍼 표면에 증착해 층을 형성하는 방법이며 물리 기상 증착(PVD, Physical Vapor Deposition)은 고체나 액체 상태의 물질을 증발시켜 웨이퍼 표면에 층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온주입 공정(Ion Implantation Process)은 웨이퍼 표면에 이온을 물리적으로 삽입해 도핑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조절하거나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 증착 및 이온주입 공정 ●



출처: 삼성전자 반도체이야기

6) 금속 배선 공정(Metal Wiring Process)

금속 배선 공정은 반도체 소자들 간의 전기적 연결을 가능하게 해 회로가 완성되도록 한다.

7) EDS 공정(Electrical Die Sorting Process)

EDS 공정은 제조된 반도체 칩의 전기적인 특성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과정이다. 크게 칩 검사, 전기적 특성 평가, 분류 및 정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8) 패키징 공정(Packaging Process)

패키징 공정은 반도체 제조의 마지막 단계로 반도체 칩을 외부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전기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도록 적절한 패키지에 싸는 과정이다.

3. 반도체에 사용되는 소재와 부품

반도체 제조는 매우 정밀한 공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와 부품이 함께 사용된다. 이를 크게 나누면 웨이퍼, 공정용 소재, 장비 소모품 그리고 장비 핵심 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품목분류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소재 및 부품에 대해서만 논해 보려고 한다.

1) CMP 패드(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Pad)

CMP 패드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웨이퍼 표면의 불필요한 박막을 제거하고 평탄화하는 CMP 공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모성 부품이다. 주로 폴리우레탄 소재로 제작되며 회전하는 연마 테이블 위에 부착돼 웨이퍼와 직접 접촉해 기계적인 연마작용을 수행한다. 패드 표면은 슬러리(연마제)를 웨이퍼 표면에 균일하게 공급하고 낭비된 슬러리를 배출하기 위해 미세한 그루브나 패턴이 형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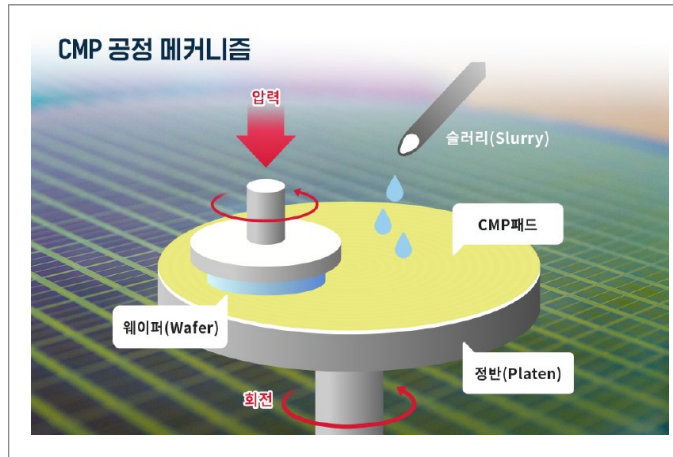
CMP 패드는 웨이퍼 연마 과정에서 마모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사용 후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이며 최근에는 환경 보호와 원가 절감을 위해 패드를 재활용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2) CMP 슬러리(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Slurry)

CMP 슬러리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과정 중 표면을 나노미터(nm) 단위로 평탄하게 깎아 내는 CMP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연마 소재다. 구체적으로 슬러리는 연마 입자

(Abrasive)와 화학 첨가제, 그리고 초순수가 혼합된 현탁액 형태다. CMP 슬러리는 반도체 회로의 미세화 및 고적층화(HBM 등)에 따라 웨이퍼 표면의 울퉁불퉁한 요철을 없애 공정 불량률을 줄이고 회로 형성을 원활하게 하는 화학적·기계적 연마제라 정의할 수 있다.

● CMP 공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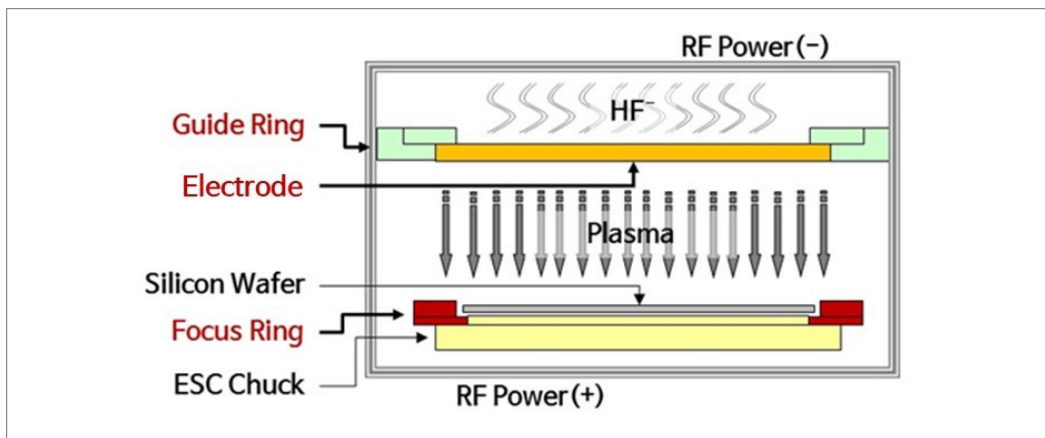


출처: SK하이닉스 뉴스룸

3) 포커스 링(Focus Ring)

포커스 링은 플라즈마 균일도를 유지하고 웨이퍼 가장자리의 식각 특성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소재에 따라 실리콘(Si)과 탄화규소(SiC) 포커스 링으로 나뉘며, Si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마모가 빠르고, SiC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수명이 길지만 가격이 비싸다. 일반적으로 Si 포커스 링은 수십에서 수백 웨이퍼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SiC는 공정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Si 포커스 링보다 몇 배 이상 사용할 수 있다.

● 포커스 링 ●



해당 그림(34p)에서 포커스 링은 플라즈마가 정확한 위치로 모여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가이드 링(Guide ring)은 전극(Electrode)을 웨이퍼에 평행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Electrode는 가스를 통과시켜 웨이퍼 표면에 플라즈마를 균일하게 분사하는 역할을 한다.

4) 샤워헤드(Showerhead)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말하는 샤워헤드(Showerhead)는 가정용 샤워기와 유사한 원리의 물품이다. 박막 증착이나 식각 장비 내에서 반응 가스를 웨이퍼 표면에 균일하게 분사해 주는 부품을 의미한다. 이 장치는 반응 가스가 흐르는 통로인 수많은 미세 구멍이 뚫린 판 구조로 돼 있어 가스가 챔버 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해 웨이퍼 전면에서 동일한 공정 결과를 얻게 하는 데 사용한다.

● 샤워헤드(반도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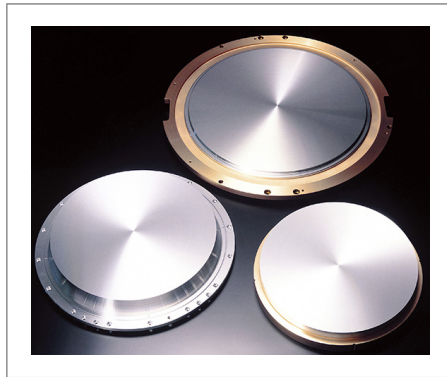


5) 구리(Cu) 스퍼터링 타겟(Target)

구리(Cu) Target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얇고 균일한 구리 박막을 증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순도 구리 원자재다. 반도체 칩이 미세화되면서 기존 알루미늄 배선보다 전기 저항이 낮고 전자이동 저항성이 높은 구리 배선 공정을 필수로 사용해야 한다. 이때 구리 원자를 공급하는 물리적 기상 증착의 핵심 재료로 이 타겟을 사용한다. 스퍼터링 공정을 설명하면 스퍼터링을 하려고 하는 챔버 내부에 실리콘 웨이퍼와 구리 타겟을 위치시킨 후 진공 상태를 만든다. 챔버 내에 아르곤가스와 같은 불활성 기체를 주입하고 고전압을 걸어 플라즈마 상태로 만든다. 플라즈마 내의 양이온(Ar+)이 전기장에 의해 고에너지로 구리 타겟 표면에 충돌하면 구리 원자나 분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맞은편 웨이퍼 표면에 균일하게 증착돼 박막을 형성한다.

요약하면 Cu Target은 반도체 배선 공정에서 고순도 구리에 플라즈마를 날려 웨이퍼에 정밀한 배선을 입히는 물리적 기상증착 공정의 핵심 원재료라 할 수 있다.

● 스퍼터링 타겟 ●



III. 경합세번

반도체 제조에 소모성으로 사용되는 소재와 부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소모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일회용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1. CMP 패드

반도체 제조를 위한 CMP 공정에서 웨이퍼를 연마하는 폴리우레탄 원형패드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그 밖의 평면모양의 것’으로 봐 제3919호에 분류할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봐 제3926호에 분류할지, ‘반도체 제조용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봐 제8486호에 분류할지 여부

2. 구리 타겟(CU Target)

반도체 제조용 스퍼터링 장비에 장착돼 웨이퍼에 타겟 성분인 구리를 증착하는 데 사용한다. ‘구리의 판·시트·스트립’으로 봐 제7409호에 분류할지, ‘반도체 제조용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봐 제8486호에 분류할지 여부

3. 샤워헤드

반도체 제조공정 중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법(PECVD,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증착장비 챔버 안으로 주입되는 가스 흐름을 제어 및 분사해 균일하고 정확하게 플라즈마를 증착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으로 제8486호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4. Si & SiC 포커싱

플라즈마 식각장비에 장착돼 플라즈마를 웨이퍼로 모아주는 부품으로 ‘반도체 전용 부분품’ 또는 제68류에 해당하는지 여부¹⁾

품목번호	품명	세율
3405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 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40 00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양허 6.5%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0 0000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양허 6.5%
90 0000	기타	양허 6.5%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90	기타	
1000	기계용의 부분품	양허 6.5%
9000	기타	양허 6.5%
7409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11	코일 모양	
1000	반도체 제조용	양허 5%
19	기타	
1000	반도체 제조용	양허 5%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10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20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40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90	부분품과 부속품	
1000	보울·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것	기본 0%
20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것	
2030	정전식 척(chuck)	기본 0%

1)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는 현재 논의 중이다.

품목번호	품명	세율
2040	도포·현상·증착·식각용 기기의 것	기본 0%
2090	기타	기본 0%
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것	기본 0%
305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3060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기본 0%
3090	기타	
4000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의 것	기본 0%

V. 관련 규정

1. 관세율표 제3405호의 용어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 제3405호 해설서

이 호에는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은·구리 등)용의 광택제와 크림, 조리용품·물 버리는 곳·타일·난로 등을 닦는데 사용하는 페이스트(paste) 상태와 가루 상태 조제품과 가죽 광택제와 크림과 같은 유사 조제품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호성능이 있는 광택제도 포함한다. 이러한 조제품은 왁스·연마제·그 밖의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제품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왁스와 광택제: 왁스에 테레빈유(spirits of turpentine)를 침투시킨 것이나 수성 매질(媒質: medium)에 왁스를 유화시킨 것이며 흔히 착색제가 첨가된다.
- (2) 금속광택제와 유리광택제: 초크나 키절구어(kieselguhr)와 같은 극히 부드러운 광택재료를 백정이나 액체비누의 유제에 현탁시킨 것이다.
- (3) 금속 등의 광택제·끝 손질제·미세연마제로서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dust)를 함유하고 있는 것
- (4) 미세하게 분쇄한 모래에 탄산나트륨과 비누를 혼합한 연마 가루: 이 연마페이스트(paste)는 이러한 연마 가루를 광물성윤활유에 왁스를 용해한 용액으로 혼합하여 만든다.

이러한 조제품은 간혹 소매용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 액체 모양·페이스트(paste) 상태·가루 모양·태블릿(tablet) 모양·막대(stick) 모양 등으로서 가정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celluar)플라스틱이나 셀룰러(celluar)고무로서, 그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시킨 방직용 섬유류의 더스터와 금속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scourer)는 제외한다(제11부와 제15부에 각각 분류한다).

2. 관세율표 제3919호의 용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 관세율표 제7409호의 용어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제7409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 라목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mm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분류한다.

판(plate)과 시트(sheet)는 보통 제7403호의 생산품을 열간(熱間)압연이나 냉간(冷間)압연하여 얻으며 ; 스트립(strip)은 압연하여 제조하거나 판(plate)과 시트(sheet)를 절단하여 얻는다.

이러한 모든 물품은 가공한 것이라 하더라도[예: 절단한 것·구멍 뚫은(천공) 것·물결 무늬 모양의 것·리브(rib)를 붙인 것·홈이 파인 것·광택을 낸 것·도장한 것·부조 모양을 붙인 것·변을 둥글게 한 것]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이 호에 해당한다[제 15부 주 제9호 라목].

0.15mm의 한계 두께는 바니시(varnish) 등의 도장물의 두께를 포함한다.

4.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 제8486호 해설서

이 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와 장치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측정, 검사, 화학분석 등의 기계와 기기는 제외한다(제90류).

(A)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 (1) 대상용융(帶狀溶融: zone melting)과 실리콘 붕 정제를 위한 1회 용융(鎔融)용 로(爐), 웨이퍼(wafer) 표면 산화를 위한 산화로(爐)와 웨이퍼(wafer)에 불순물을 도핑하기 위한 확산로(爐)
- (2) 결정 성장기나 결정 인상장치(puller): 얇게 절단되어진 웨이퍼(wafer)나 고순도 단결정 반도체 보울(boule)을 생산하는 기계
- (3) 결정 연마기: 웨이퍼(wafer)에서 요구되는 정밀한 직경으로 단결정 보울(boule)을 연마하거나 단결정에서 요구되는 전기전도 형태와 저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울을 평평하게 연마하는 기계
- (4) 웨이퍼(wafer)를 얇게 절단하는 톱기계(wafer slicing saw): 단결정(monocrystalline) 반도체 재료인 보울(boule)을 웨이퍼로 얇게 절단하는 기계

(5) 반도체 웨이퍼(wafer)를 가공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웨이퍼 연마기(wafer grinder), 래퍼(lapper), 광택기(polisher)
 (6) 화학적·기계적 광택기(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er) ... <중략> ...
 (B)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예를 들면,
 (1) 막 형성 장비(film formation equipment): 이 장비는 웨이퍼(wafer) 가공 공정에서 웨이퍼(wafer) 표면에 여러 가지 막을 형성한다.
 ... <중략> ...
 (2) 도핑(doping) 장비: 반도체 층의 전도성이나 그 밖의 특성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웨이퍼 표면에 불순물을 주입시키는 장치. 예를 들면,
 ... <중략> ...
 (3) 식각(etching)과 스트리핑(stripping) 감광액 박리장비 ... <중략> ...
 (4) 석판인쇄 장비(lithography equipment): 감광액이 도포된 반도체 웨이퍼(wafer) 표면에 회로모형을 전사하는 기계 ... <중략> ...
 (5) 노광(露光)된 웨이퍼(wafer)를 현상하는 장비 ... <중략> ...
 (E)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tool holder)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

VI. 품목분류

1. CMP 패드

결정 세번	제8486.90-2090호
물품 설명	<p>○ 물품 개요 반도체 제조공정 중 CMP 공정*에서 웨이퍼와 직접 접촉해 웨이퍼 표면을 연마하기 위한 폴리우레탄 재질의 원형 패드(일명 'CMP패드')로, 뒷면에는 접착 필름이 부착돼 있고, 표면에는 2.03mm 피치를 가진 약 10mm 길이의 세그먼트로 구성된 나선형 그루브**(Spiral Groove)가 형성돼 있음.</p> <p>*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반도체 회로가 복잡해지면서 여러 층의 배선과 층간 절연막 등이 반복적으로 쌓일 때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다음 층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화학물질과 연마제를 활용해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공정</p> <p>** 연마제(slurry)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가공된 홈을 말하며, 패턴은 프로그래밍에 의해 생성</p>
결정 사유	<p>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p> <p>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6.90호에는 '부</p>

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A) 보울이나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그룹에서 “(6) 화학적·기계적 광택기(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er): 화학적인 제거와 기계적인 버핑(buffing) 연마가 같이 수행되어 웨이퍼의 평면을 평탄하게 하고 연마하는 기계”를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로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제3909호에 분류되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원형의 패드로 표면가공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닌 원형이고 접착성 있는 평면 모양의 것이므로 제3919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과 본품은 반도체 제조장비인 CMP 기계에 장착돼 웨이퍼의 표면을 평탄화하고 연마하기 위한 패드로, 표면에 미세한 나선형 그루브가 형성돼 있는 등 기능과 형상 측면에서 CMP 기계에만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486호 기계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6.90-2090호에 분류함.

2. CMP 슬러리

결정 세번 제3405.40-0000호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1,2,4-트리아졸, 무정형 실리카, 에틸렌글리콜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흰색 액체
- 용도
반도체 연마제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3405호에는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405.40호에는 ‘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조제품은 왁스, 연마제, 그 밖의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고 있으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3) 금속 등의 광택제·결손질제·미세연마제로서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를 함유하고 있는 것, (4) 미세하게 분쇄한 모래에 탄산나트륨과 비누를 혼합한 연마가루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연마제 등으로 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5.40-0000호에 분류함.

3. 구리 타겟

결정 세번	제8486.90-2040호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개요 구리(99.99%) 재질의 타겟(Target)과 구리 합금(Chromium Zirconium Copper, Cu 96%·Ni 1.8~3.0%·Si 0.4~0.8%·Cr 0.1~0.8%) 재질의 백킹플레이트(Backing Plate)가 일체로 결합된 원형상의 물품으로, 반도체 제조용 스퍼터링 장비에 장착돼 웨이퍼에 타겟 성분인 구리 증착에 사용 타겟과 백킹플레이트는 고온으로 압력을 가한 확산접합(Diffusion Bonding)으로 결합돼 분리 불가능하므로, 타겟과 백킹플레이트는 재사용 불가 ○ 구성 요소 및 기능 타겟(21.9kg): 웨이퍼 위에 구리를 증착하기 위한 원료 백킹플레이트(17kg): ① 챔버 내부에 타겟을 고정·지지, ② 증착 작업 시 발생하는 타겟의 열을 챔버 상단의 냉각 시스템으로 전달(열전도)해 타겟의 온도 상승 방지, ③ 전압을 인가받아 타겟에 음극을 형성하는 도체 기능 수행
결정 사유	<p>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 <중략> …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 8486.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에서 “(b) 화학기상증착(CVD: Chemical Vapour Deposition) 장비”와 “(c) 물리기상증착(PVD: Physical Vapour Deposition) 장비: 어떠한 고체를 기화시킴으로써 얻는 다양한 형태의 막을 증착시킨다. 예를 들면, … <중략> … (2) 증착(sputtering) 장비: 이온이 있는 원료물질을 포격함으로써 막을 생성한다”라고 이 호의 기계로 예시하고 있음.</p> <p>본 건 물품은 제8486호에 분류되는 반도체 제조용 증착장비인 스퍼터링 장비에 장착돼 웨이퍼에 타겟 성분인 구리의 증착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스퍼터링 장비에 장착되도록 특정 형상을 갖추고 있고, 백킹플레이트가 도체(음극)로 작동해 타겟에 전류가 흘러 증착이 가능하게 하며, 증착 공정 시 타겟에서 발생하는 열을 챔버 내 냉각시스템으로 전달해 과열을 방지하므로 제8486호 반도체 제조용 기계인 스퍼터링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p> <p>따라서, 본 건 물품은 금속 증착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6.90-2040호에 분류함.</p>

4. 샤워헤드

결정 세번	제8486.90-2040호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개요 반도체 제조공정 중 PECVD 증착 장비(VXL MD PM) 챔버(Chamber) 내부 Top Plate에 조립되는 샤워헤드(SHOWER HEAD)로 다수의 홀이 균일하게 가공된 거꾸로 된 깔대기 형상의 물품 ○ 용도 Chamber 안으로 주입되는 Gas 흐름을 제어 및 분사해 균일하고 정확하게 플라즈마 증착을 할 수 있도록 함.
결정 사유	<p>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p> <p>같은 호 해설서에 "(B)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예를 들면, (1) 막 형성 장비 ... <중략> ... (b) 화학기상증착(CVD: Chemical Vapour Deposition) 장비: 이 장비는 높은 온도의 반응 체임버(chamber) 내에서 적절한 가스와 결합하여 만든 여러 가지 형태의 필름을 증착시키는 장치이다. 이 반응은 열화학적 기상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반응 작용은 상압(atmospheric pressure)이나 저압상태(LPCVD)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플라즈마(plasma) 화학증착(PECVD)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p> <p>또한 "(E) 부분품과 부속품" 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tool holder)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p> <p>따라서, 본 물품은 PECVD 증착 장비 챔버 내에 장착돼 Gas 흐름을 제어 및 분사하는 증착 장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6.90-2040호에 분류함.</p>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조제된 달걀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 사례와 상관없음

달걀은 영양이 풍부하고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며, 노른자에는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E, 인, 칼슘 등이 포함돼 있다. 색깔은 흰색과 갈색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달걀은 갈색달걀이다.

달걀은 대체적으로 노른자위(난황), 흰자위(난백), 껍질(난각)로 이뤄져 있다. 껍질은 주로 탄산칼슘으로 이뤄져 있는데, 바깥으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여 안에서 호흡한 뒤 바깥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수 있게 돼 있다. 껍질의 안쪽에는 얇은 세포막이 자리잡고 있다. 노른자위는 알끈에 의해 알의 중심이 고정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삶은 달걀을 껍질을 제거하고 간장과 향신료가 들어간 **조미액에 절여** 하나씩 플라스틱제 팩으로 진공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는 제0407.90-0000호로 신고됐다.

품목번호	품명
제0407호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8호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0408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모든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를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 것·성형한 것(예: 원통형의 ‘long egg’)·냉동하거나 그 밖의 보존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b) 조미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함유하는 새의 알 조제품(제2106호)”은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껍질을 제거하고 조리한 것으로 제0407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간장과 향신료가 들어간 조미액으로 달걀을 절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제0408호에서도 제외된다.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삶은 달걀 껍질을 제거하고 간장과 향신료 등이 들어간 조미액에 절여 하나씩 진공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제2106.90-9099호로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MARINATED EGG	0407.90-0000 (A 27%)	Other food preparations	2106.90-9099 (A 8%)

EVENT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선착순 도서 증정 이벤트

2026.3.20~소진 시까지



100명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주문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도서 증정

이벤트 안내

진행 기간 : 3월 20일(금)~소진 시까지

참여 대상 :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주문 고객

꼭 확인해 주세요

-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리며, 주문시기에 따라 도착 예정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부 이상 주문하더라도 증정 도서는 주문자(기업)당 1부씩 보내드립니다.
- 주소 등 개인정보 오기입으로 인해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이벤트는 선착순 증정 이벤트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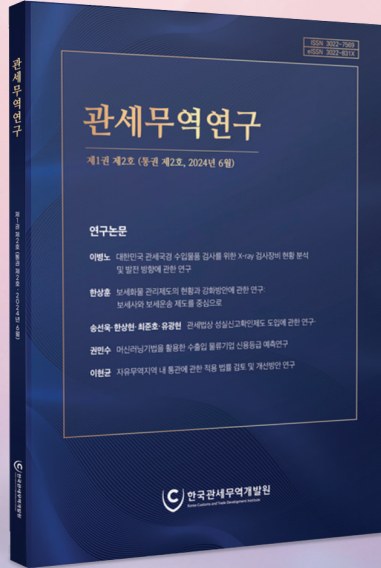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